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형용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사유

- 인구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 - 기존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저출산 지원만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화 및 지역 인구감소(저출산, 인구유출 등)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 - = 이에,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- ※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 : 5개 시도 제정 (경기, 강원, 전북, 전남, 경남)

4. 주요내용

- 가. 인구정책 등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나.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 및 도민의 책무(안 제3, 4조)
- 다.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도에서 추진할 인구정책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마.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5조)
- 바.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
사. 인구정책 추진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아.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(부칙 제2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의 경우 총 인구수는 최근 5년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, 11개 시·군별로 보면, 청주, 충주, 진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.

<최근 5년간 충청북도 시·군별 인구증감 추이>

(단위 : 명)

| 연 도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.9월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충 북 | 1,583,952 | 1,591,625 | 1,594,432 | 1,599,252 | 1,599,339 |
| 청주시 | 831,912 | 835,197 | 835,590 | 837,749 | 839,428 |
| 충주시 | 207,913 | 208,350 | 208,316 | 210,504 | 210,504 |
| 제천시 | 136,138 | 136,517 | 136,432 | 135,386 | 134,916 |
| 보은군 | 34,296 | 34,221 | 34,053 | 33,680 | 33,139 |
| 옥천군 | 52,404 | 52,267 | 51,766 | 51,465 | 51,132 |
| 영동군 | 50,693 | 50,552 | 50,240 | 49,715 | 48,883 |
| 증평군 | 36,671 | 37,308 | 37,783 | 37,317 | 37,469 |
| 진천군 | 67,981 | 69,950 | 73,677 | 78,218 | 80,933 |
| 괴산군 | 38,787 | 38,973 | 39,054 | 39,133 | 37,875 |
| 음성군 | 96,396 | 97,787 | 97,306 | 95,830 | 95,184 |
| 단양군 | 30,761 | 30,503 | 30,215 | 30,255 | 29,876 |

※자료: 행정안전부, 주민등록인구현황

- 또한 충북의 합계출산율도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높지만, 매년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며, 고령인구비율도 전국평균에 비해 매년 1.5%이상 높은 수치를 보임.

<최근 5년간 충청북도 합계출산율 추이>

(단위 : 명)

| 연 도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전 국 | 1.205 | 1.239 | 1.172 | 1.052 | 0.977 |
| 충 북 | 1.363 | 1.414 | 1.358 | 1.235 | 1.172 |

※자료: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

<최근 5년간 충청북도 고령인구비율 추이>

(단위 : %)

| 연 도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.9월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전 국 | 13.15 | 13.53 | 14.21 | 14.76 | 15.30 |
| 충 북 | 14.82 | 15.12 | 15.83 | 16.37 | 16.93 |

※자료: 통계청, 지역통계총괄과

-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지역인구의 타 지역 유출에 있으며, 충북의 경우 직업과 교육 등을 위한 청년인구의 유출이 가장 심각함.

<충청북도 20대(20~29세)청년 시·도간 전·출입 현황>

(단위: 명)

| 구분 | 2016 | 2017 | 2018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시도간 전입 (A) | 19,661 | 19,935 | 21,748 |
| 시도간 전출 (B) | 21,798 | 22,152 | 23,397 |
| 청년인구 유출 (A)-(B) | -2,137 | -2,217 | -1,649 |

※ 자료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-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(저출산, 인구 고령화, 인구 유출 등)에 대응한 광역차원의 종합적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함.
- 현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저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화 및 지역 인구감소(저출산, 인구 유출 등)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.

- 따라서,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본칙 4개장 17개조와 부칙 3개조로 구성됨.
- 안 제1조부터 안제5조(제1장 총칙)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,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등 도의 책무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 - 특히 안제2조 용어 정의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기존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는 셋째아 이상으로 정의하였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둘째아 이상으로 정의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함.

|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|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」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 “다자녀가정”이라 함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<u>셋째이상 자녀</u> 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| 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<u>둘째아 이상</u>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|

- 안 제6조에는, 5년 단위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.
 - 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중앙 정부의 역점 추진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라고 판단됨.

- 안 제8조에는,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구정책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·군, 관련기관, 법인·단체, 개인 등에 보조금 등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10조부터 제15조(제3장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)에서는,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인구정책 중 임신·출산·양육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,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.
 - 또한 기존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‘저출산대책위원회’는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이 담당하고 위원수도 9명 이내였으나, 본 조례에 따른 ‘인구정책위원회’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, 위원수도 20명 이내로 확대함.

|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|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」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충청북도 저출산대책위원회 - 위원장: 기획관리실장 - 위원수 :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- 위원장: 행정부지사 - 위원수 :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|

- 안 제16조 및 제17조(제4장 보칙)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효율적 대응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, 토론회, 간담회 등의 운영과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기업·단체·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규정함.

- 부칙에서는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와, 종전의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위원은 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도록 한 경과조치를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,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타당함.